



교육감 규정

번호: A-413

제목: 학교에서의 핸드폰 및 기타 전자제품 사용

항목: 학생

발행: 2015 년 2 월 26 일 목요일

요약

이것은 신규 규정입니다. 본 규정서는 학교에서의 다음과 같은 물품의 보유와 활용에 관한 교육청("DOE")의 정책을 수립합니다: 학교에서의 1) 핸드폰 2) 랩톱, 태블릿, 아이패드 및 기타 유사한 컴퓨팅 기계("컴퓨팅 기계"), 및 3)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사용. 핸드폰, 컴퓨팅 기기 및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보유가 학교에서 허용됩니다. 각 학교는 반드시 본 규정서에 부합하는 교내에서의 관련 물품 사용에 관한 학교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 본 규정은 2006년 11월 8일 자 교육감 규정 A-412의 섹션 V(D), V(E), V(F) 및 첨부 A를 대체합니다.

I. 교육청 정책

- A.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: 1) 핸드폰, 2) 랩톱, 태블릿, 아이패드와 기타 비슷한 컴퓨팅 기기 "컴퓨팅 기기"; 및 3)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(아이패드, MP3 플레이어, PSP 및 닌텐도 DS) 관련 제품.¹
- B. 핸드폰이나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학교 퀴즈, 시험 또는 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작동시키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²
- C. 컴퓨팅 기기는 학교에서 재량으로 허용했거나 개별 교육 프로그램(IEP)이나 섹션 504 조정 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퀴즈, 시험 또는 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켜 놓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D.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학교 화재 대비 훈련이나 기타 응급상황 대비 훈련 시간 동안에는 전원을 끄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.
- E. 휴대전화, 컴퓨팅 기기 및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
II. 학교 차원의 정책을 서면으로 작성

- A. 학교장은 반드시 본 규정서에 부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진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학교 차원의 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:
 - 1.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.
 - 2. 이런 물품들의 압수, 보관 및 반환 절차.
- B. 학교장은 반드시 학교 리더십 팀 ("SLT")과 협의하여 학교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.
- C. 또한, 캠퍼스의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들은, 해당 빌딩 위원회(Building Council)에서 반드시 체육관, 강당, 복도 및 카페테리아와 같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이런 기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³

¹ 교육감 규정 A-412의 섹션 V(D), V(E), V(F) 및 첨부 A는 이 규정에 따라 대체됩니다.

² 뉴욕주 표준화 시험 기간 중 핸드폰, 컴퓨팅 기기 및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사용은 뉴욕주 교육부 규정에 따릅니다.

³ 캠퍼스의 각 학교는 해당 캠퍼스 정책에 관한 1개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다수결로 결정될 것입니다. 투표 결과 동수의 표가 나왔다면, 빌딩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캠퍼스 관리 담당실(Office of Campus

- D. 모든 학교 차원의 정책들은 반드시 2014-2015 학년도 대상으로 2015년 3월 2일까지 채택되어야 하며 이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.
- E. 2014-2015 학년도 대상으로 2015년 3월 2일까지 학교 기반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였다면, 학교장은 반드시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과 같은 임시 정책들 중 하나를 채택하고 반드시 이런 정책들을 아래 섹션 III A 및 III B에 규정한 것처럼 2015년 4월 1일까지 학생, 학부모 및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.
1. 학생들은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학교에 가져올 수 있지만 학교에서 전원을 켜 놓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;
 2. 학생들은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학교에 등교할 때 교문에서 수집하고 학교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공간에 보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학생들은 컴퓨팅 기기와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학교에 가져올 수 있지만 학교에서 전원을 켜 놓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;
- F. 2015-2016 학년도부터 매년 10월 31일까지 학교들은 아래 섹션 III A 및 III B에 규정한 것처럼 반드시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고 학생, 학부모 및 직원과 관련 정책을 안내 했음을 통합 학교와 청소년 개발 계획(Consolidated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Plan)에 10월 31일까지 인증하여야 합니다.

III. 학교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정책

- A. 각 학교는 반드시 이 규정과 학교 정책의 서면 공지 내용을 학생, 학부모 및 직원에게 10월 31일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. 2014-2015 학년도에만, 이런 공지는 반드시 2015년 4월 1일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.
- B. 각 학교는 반드시 이 규정과 학교 정책에 대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0월 31일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2014-2015 학년도에만,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2015년 4월 1일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C. 각 학교는 반드시 학교 웹사이트에 이 정책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합니다.

IV. 학생 징계

교육청의 규율 규정, 학교 정책, 교육감 규정서 A-413 및/또는 교육청의 허용 가능한 인터넷 사용과 안전 정책("IAUSP")의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

Governance)에 연락합니다.

시스템을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규율 규정에 정해진 지도 중재와 징계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.

V.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압수

학교에서 교육청의 규율 규정, 학교 정책, 교육감 규정서 A-413 및/또는 교육청의 허용 가능한 인터넷 사용과 안전 정책("IAUSP")을 위반하여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휴대용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압수한다면 학교장/대리인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반드시 연락하여야 합니다. 이런 물품들의 압수, 보관 및 반환은 반드시 학교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. (아래 섹션 II 참조)

VI. 예외

교육감은 학교 시스템을 위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 규정서 또는 그 일부의 적용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
VII. 문의

본 규정서에 관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:

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(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)

N.Y.C. Department of Education

52 Chambers Street – Room 218

New York, NY 10007

전화: 212-374-4220

팩스: 212-374-5751